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8. 23.

김향숙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08. 2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9. 10.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최두임 의원)

가. 제안이유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을 반영 및 참고하여 고성군 청년의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지원분야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인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하여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 중 연령대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18세 이상 45세 이하(현행) → 18세 이상 49세 이하(개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 없음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39호
 - 예고기간: 2024. 8. 23.(금) ~ 2024. 8. 28.(수)[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청년 대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의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대를 45세에서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청년의 범위를 49세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현행: 18세 이상 45세 이하
 - 개정: 18세 이상 49세 이하

- 청년에 대한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자가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 8. 현재 청년인구 현황(총인구수 48,463명)

- 18세 이상 45세 이하: 9,633명(19.88%)
- 18세 이상 49세 이하: 11,898명(24.55%)
- 조례 개정으로 수혜대상자 2,265명 증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